

<소규모 펀드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소규모 펀드(1년) 여부 공시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해당사항 없음

보고서코드	회사코드	펀드명 1) (운용펀드)	펀드명 2) (투자자펀드)	펀드코드 1) (운용펀드)	펀드코드 2) (투자자펀드)	발생일자 (기준일자)	비고
20F1100	A01038						

1) 최상위 운용 펀드, 모자형 구조인 경우는 모펀드 기준으로, 종류형 펀드의 경우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  
 2) 최하위 투자자가 가입하는 펀드(고객접점펀드)  
 ※ 상기 소규모 펀드는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소규모 펀드(1개월) 여부 공시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보고서코드	회사코드	펀드명 1) (운용펀드)	펀드명 2) (투자자펀드)	펀드코드 1) (운용펀드)	펀드코드 2) (투자자펀드)	발생일자 (기준일자)	비고
20F1101	A01038	슈로터아시아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슈로터아시아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CPe(퇴직연금)	KRS230AC4523	K55230BT8134	2024-02-02	
20F1101	A01038	슈로터아시아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슈로터아시아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Pe	KRS230AC4523	K55230BI14003	2024-02-02	
20F1101	A01038	슈로터아시아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슈로터아시아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S-P	KRS230AC4523	K55230B653447	2024-02-02	
20F1101	A01038	슈로터아시아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슈로터아시아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A	KRS230AC4523	KRS230AC4531	2024-02-02	
20F1101	A01038	슈로터아시아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슈로터아시아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A-e	KRS230AC4523	KRS230AC4549	2024-02-02	
20F1101	A01038	슈로터아시아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슈로터아시아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	KRS230AC4523	KRS230AC4566	2024-02-02	
20F1101	A01038	슈로터아시아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슈로터아시아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e	KRS230AC4523	KRS230AC4564	2024-02-02	
20F1101	A01038	슈로터아시아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슈로터아시아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S	KRS230AC4523	KRS230AP9629	2024-02-02	
20F1101	A01038	슈로터아시아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슈로터 아시아 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 C-P	KRS230AC4523	KRS230AI14987	2024-02-02	
20F1101	A01038	슈로터아시아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슈로터아시아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C-CP(퇴직연금)	KRS230AC4523	K55230B69460	2024-02-02	

1) 최상위 운용 펀드, 모자형 구조인 경우는 모펀드 기준으로, 종류형 펀드의 경우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  
 2) 최하위 투자자가 가입하는 펀드(고객접점펀드)  
 ※ 상기 소규모 펀드는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소규모 펀드 해소 공시: 해당사항 없음

보고서코드	회사코드	펀드코드 1) (운용펀드 기준)	펀드명 2) (등록일)	최초설정일 1)	소규모펀드가 된 시점 2)	정리방법 3)	정리일 2), 4)
20F1105	A01038						

1) 모자형 구조인 경우는 모펀드 기준으로, 종류형 펀드의 경우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  
 2) YYYY-MM-DD방식으로 기재  
 3) (1) 임의해지, (2) 소규모합병, (3) 모자형 이전, (4) 모펀드 교체, (5) 기타 중 예1하여 기재. 단 기타의 경우 ( )안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예) 기타(추가판매) 등  
 4) 모자형이전의 경우, 수익자통지일을 정리일로 기재  
 5) 정리계획을 기타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기재

(4) 소규모 펀드 해소 공시(세부): 해당사항 없음

보고서코드	회사코드	펀드명1 (운용펀드)	펀드명2 (투자자펀드)	협회코드1 (운용펀드)	협회코드2 (투자자펀드)	모자형구조 해당 여부	근거 법률	정리일자
20F1103	A01038							

1) 최상위 운용 펀드, 모자형 구조인 경우는 모펀드 기준으로, 종류형 펀드의 경우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  
 2) 최하위 투자자가 가입하는 펀드(고객접점펀드)

1) 펀드코드는 반드시 12자리 코드로 기재  
 2) 근거법률은 "중투법", "간투법", "자본시장법" 중에 기재

< 참조 > 소규모 펀드 비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체치 개정(2022.8.30)에 따라, 소규모 펀드 비율 공시는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항목에서 삭제되었으나, 참조 목적으로 공시함

[금융투자업규정\* 기준]

공모추가형 펀드수(운용펀드기준)						소규모 펀드수					
전체 (A)	규정 제7-1조의3제1항제3호 가목 (B)	규정 제7-1조의3제1항제3호나목 (C)	규정 제7-1조의3제1항제3호다목 (D)	규정 제7-1조의3제1항제3 호마목 (E)	차감 계 (F=A-B-C-D-E)	전체 (G)	규정 제7-1조의3제1항제3호가목 (H)	규정 제7-1조의3제1항제3호나목 (I)	규정 제7-1조의3제1항제3호다목 (J)	규정 제7-1조의3제1항제3호라 목 (K)	규정 제7-1조의3제1항제3호마 목 (L)
18	0	0	0	0	18	1	0	0	0	0	0

\*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3(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 요건)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기준]



공모추가형 펀드수(운용펀드기준)					소규모 펀드수					소규모 펀드 비율 (=J/E)
전체 (A)	제4조제3항제1 호 펀드 (B)	제4조제3항제2호 펀드 (C)	제4조제3항제3호펀드 (D)	차감 계 (E=A-B-C-D)	전체 (F)	제4조제3항 제1호 펀드 (G)	제4조제3항제2호 펀드 (H)	제4조제3항 제3호펀드 (I)	차감 계 (J=F-G-H-I)	
18	0	0	0	18	1	0	0	0	1	5.56%

사\*경/0116206\*\*



하나은행

사\*경/0116206\*\*



하나은행

사\*경/0116206\*\*



하나은행